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다2153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

재판경과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다21535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2014나1210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3가합464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A

피고, 상고인J

판결 선고 2016. 7. 7.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2014나12100 판결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며, 그 사유에 대하여는 소송행위를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여기서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지는 아니하며, '동거인' 역시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된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정본이 2016. 2. 1.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인 배우자 AP에게 교부됨에 따라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간의 상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2. 24.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피고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정본을 전달받지 못하다가 2016. 2. 18.에서야 아들로부터 전달받음으로써 상고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 사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2) 피고가 종전의 판결선고기일(2015. 9. 23.)에 관한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에 관한 이 사건 소송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